

# 무엇이든 물어보세요~!

**Question** 한국을 수리관청으로 선택 후 PCT 국제출원 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?

**Answer**

- 대한민국 국민(자연인·법인)
-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(자연인·법인)
-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者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营业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 하는 者

**Question** 국제출원 시 선택하는 국제출원언어는 무엇입니까?

**Answer**

- 국제출원언어는 수리관청이 정합니다.
- 한국특허청이 수리하는 국제출원언어는 국제출원서 : 영어 또는 일어이고, 명세서 : 국어, 영어, 일어입니다.

**Question**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수리관청에서 방식심사를 합니까?

**Answer**

- 그렇습니다. 수리관청에서 국제출원서를 방식심사하며 방식심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출원일을 인정하고, 하자가 있으면 보정 또는 보완할 것을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. 수리관청의 국제출원일 인정은 모든 지정국에 정규의 국내출원이 제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.

**Question**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지 1년이 지나면 국제 특허를 출원할 수 없습니까?

**Answer**

- 국제출원 시 유의할 점은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출원하는 것으로써,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, 상표와 디자인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한 출원일을 외국출원에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 
국내출원 후 당해 출원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이 가능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국내에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국제출원을 할 수는 있으나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외국 특허청에의 출원일 또는 PCT 출원인 경우는 대한민국 특허청에의 국제출원일에 의하여 각국에서의 특허등록요건의 충족여부가 판단되므로 신규성 적용 등에 있어서 출원 전 공개된 경우 등록 받을 수 없게 됩니다.